

# 『1급 소방안전관리자』 시험 안내

(Ver 24.3)



구 분	주 요 내 용														
근거 법령	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														
시행 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법 시행령 제31조(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)</li> <li>• 동법 시행령 별표 6(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)</li> <li>• 동법 시행규칙 제22조(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)</li> <li>•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·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</li> </ul>														
응시 자격	<p>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(이하 “고등학교”라 한다)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(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이 있는 사람</p> <p>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</li> <li>2) 법령에 따라 1)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</li> <li>3)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</li> </ol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 padding: 5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소방안전 관련 교과목·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」</p> <p><b>제2조(소방안전 관련 교과목)</b></p> <table border="0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>1. 소방안전관리론(소방학개론, 재난관리론,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)</td> <td>2. 유체역학</td> </tr> <tr> <td>3.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</td> <td>6. 건축공학</td> </tr> <tr> <td>4. 소방시설의 구조원리</td> <td>7. 전기·전자공학</td> </tr> <tr> <td>5. 방화 및 방폭공학</td> <td>8. 가스안전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9. 기계공학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10. 화재유동학(열역학, 열전달을 포함한다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11. 화재조사론</td> </tr> </table> <p><b>제3조(소방안전 관련 학과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기공학과(전기과, 전기설비과, 전자과, 전자공학과, 전기전자과, 전기전자공학과,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)</li> <li>2. 산업안전공학과(산업안전과, 산업공학과, 안전공학과,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)</li> <li>3. 기계공학과(기계과, 기계학과, 기계설계학과, 기계설계공학과,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)</li> <li>4. 건축공학과(건축과, 건축학과, 건축설비학과,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)</li> <li>5. 화학공학과(공업화학과,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)</li> <li>6. 학군,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(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)</li> </ol> <p><b>제4조(소방안전관리학과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소방안전관리과(소방안전과를 포함한다)</li> <li>2. 소방시스템학과</li> <li>3. 소방학과</li> <li>4. 소방환경관리과(소방환경안전학과, 소방환경방재학과,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)</li> <li>5. 소방공학과</li> <li>6. 소방행정학과</li> <li>7. 소방방재학과</li> <li>8. 소방기계·전기·설비과</li> <li>9. 학군,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(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)</li> </ol> </div>	1. 소방안전관리론(소방학개론, 재난관리론,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)	2. 유체역학	3.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	6. 건축공학	4. 소방시설의 구조원리	7. 전기·전자공학	5. 방화 및 방폭공학	8. 가스안전		9. 기계공학		10. 화재유동학(열역학, 열전달을 포함한다)		11. 화재조사론
1. 소방안전관리론(소방학개론, 재난관리론,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)	2. 유체역학														
3.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	6. 건축공학														
4. 소방시설의 구조원리	7. 전기·전자공학														
5. 방화 및 방폭공학	8. 가스안전														
	9. 기계공학														
	10. 화재유동학(열역학, 열전달을 포함한다)														
	11. 화재조사론														

- 다. 소방행정학(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) 또는 소방안전공학(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)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
- 라.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마.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
- 바.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사.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(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)이 있는 사람
- 아.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자.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

※ 참고 사항

- “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”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
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4조(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 이하 “관리업자”라 한다)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시험 정보	시험명	1급 소방안전관리자
	시험일정 및 장소	사이트 시험일정 참고 (안전원사이트 내 소방안전교육>시험접수>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)

시험 정보	시험과목	구분	내용		
		1과목	소방안전관리자 제도		
			소방관계법령		
			건축관계법령		
			소방학개론		
			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·관리		
			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		
			위험물·전기·가스 안전관리		
			종합방재실 운영		
			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		
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					
2과목	소방시설(소화·경보·피난구조·소화용수·소화활동설비)의 구조				
	소방시설(소화·경보·피난구조·소화용수·소화활동설비)의 점검·실습·평가				
	소방계획 수립 이론·실습·평가(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)				
	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·실습·평가				
	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·평가				
	업무수행기록의 작성·유지 및 실습·평가				
	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·실습·평가				
	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·실습·평가				
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·평가					
※ 근거 :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」 별표4					
시험방법 및 시간	시험 방법	배 점	문항수	시간	
	객관식(선택형, 4지 1선택)	1문제 4점	50문항 (과목별 25문항)	1시간(60분)	
합격자 결정	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				
합격자 발표	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				
자격증 발급	합격자에 한하여 「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」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				
시험 접수	접수방법	구 분	시도지부 방문접수 (근무시간 : 9:00 ~ 18:00)	안전원 사이트 접수 (www.kfsi.or.kr)	
		접수시 관련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응시수수료 (현금, 카드 등)</li> <li>사진 1매</li> <li>응시자격별 증명서류(해당자 한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응시수수료 결제 (신용카드, 무통장입금)</li> </ul>	
		증빙이 불필요한 경우	가 능	가 능	
		증빙이 필요한 경우 (최초 학력, 경력, 학경력, 관련자격증의 경우)	가 능	가 능 단, 사전심사 필요 (5~7일 소요)	
※ 안전원 사이트 접수 시(마감된 시험일정의 경우 접수 불가) · 강습교육 수수료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급수의 자격시험에 응시이력이 있을 경우 → ‘시험일정’에서 접수가능 · 경력·학력·자격증 등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(최초에 한함) → 홈페이지 내의 ‘응시자격 심사 신청’에서 해당 응시자격 신청(증빙자료 첨부 必) 단, 5~7일 소요되며, 심사완료 후 승인 시 ‘시험일정’에서 접수 가능					

		<p><b>[접수시 주의사항]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2. 접수된 응시원서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3. 시험일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 전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가능하며 시험당일 이후에는 일정변경 및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.(결시자 포함)</li> <li>4.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,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</li> </ol>								
	<p><b>수수료</b></p>	<p><b>12,000 원</b>                  ※ 계산서는 현금(무통장입금 포함)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.                  (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)</p>								
	<p><b>일정변경</b></p>	<p>해당시험 전일 근무시간까지 일정변경 가능</p>								
<p><b>시험 접수</b></p>	<p><b>제출서류</b>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험응시원서 *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</li> <li>2. 증명사진(3.5cm x 4.5cm)</li> <li>3.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</li> <li>4. 응시자격 증명서류</li> </ol> <p>※ 3, 4는 학경력 등 시험접수자 중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</p>								
	<p><b>환불 규정</b></p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환불 기준</th> <th>금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한 경우</td> <td>과오납 금액</td> </tr> <tr> <td>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</td> <td>전 액</td> </tr> <tr> <td>시험시행일 부터</td> <td>환불불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</p>	환불 기준	금 액	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한 경우	과오납 금액	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	전 액	시험시행일 부터	환불불가
환불 기준	금 액									
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한 경우	과오납 금액									
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	전 액									
시험시행일 부터	환불불가									
	<p><b>응시표 교부</b></p>	<p>시험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합니다.</p>								
<p><b>시험 응시자 유의 사항</b></p>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응시자는 응시표에서 정한 입실 시간(<b>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</b>)까지 응시표, 신분증, 필기도구(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), 사진(미제출자에 한함)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</li> <li>2.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.                  ※ 신분증의 범위 : 공무원증,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), 운전면허증, 여권 및 학생증(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함)에 한함</li> <li>3.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4. 답안카드에 시험교시, 응시번호, 성명 등을 기재·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</li> <li>5.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, 수정테이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.</li> <li>6.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(휴대전화기, 무선호출기, PDA 등) 및 MP3, 녹음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, 휴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7.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,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 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.</li> <li>8.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</li> <li>9.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, 시험 종료 30분전부터 답안 제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10. 시험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</li> </ol>								

11. 응시자는 시험시행 공고문, 응시표,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 
시험접수 및  
결제방법  
안내

1. 안전원 사이트 로그인
2. 안전원 사이트 “소방안전교육-시험신청” ⇨ “시험일정” 클릭 ⇨ 응시하고자하는 지부 시험날짜 클릭 ⇨ 시험신청자 정보입력 ⇨ 신용카드 결제 또는 LG데이콤 무통장 계좌할당 및 입금 ⇨ 시험신청 완료



지부별  
연락처

- 근무시간 : 09:00 ~ 18:00 (점심시간 : 12:00 ~ 13:00)
- 지부별 연락처

지부(지역)	연락처	지부(지역)	연락처
서울지부(서울 영등포)	02-850-1378	서울동부지부(서울 신설동)	02-850-1392
부산지부(부산 금정구)	051-553-8423	대구경북지부(대구 중구)	053-431-2393
인천지부(인천 서구)	032-569-1971	울산지부(울산 남구)	052-256-9011
경기지부(수원 팔달구)	031-257-0131	경기북부지부(파주)	031-945-3118
대전충남지부(대전 대덕구)	042-638-4119	경남지부(창원 의창구)	055-237-2071
충북지부(청주 서원구)	043-237-3119	광주전남지부(광주 광산구)	062-942-6679
강원지부(횡성군)	033-345-2119	전북지부(전북 완주군)	063-212-8315
제주지부(제주시)	064-758-8047		

# [ ]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

※ 음영부분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접수자에 한하여 [ ]에 √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

응시자	응시번호	[ ] 제1차시험 [ ] 제2차시험	시험장소(응시지역)	사 진 (가로 3.5cm × 세로 4.5cm)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	전화번호		
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( )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응시자

(서명 또는 인)

##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

응시자 제출서류 등	1. 사진(가로 3.5cm × 세로 4.5cm) 2. 응시자격 증명서류(해당자에 한함) 3. 응시자 신분증(본인여부 확인 용도) 4. 대리인의 신분증(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)	수수료 특급 1차시험 1만8천원 특급 2차시험 2만4천원 1·2·3급 시험 1만2천원
---------------	--	--

(자르는 선)

## 응 시 표

응시번호	[ ] 제1차시험 [ ] 제2차시험	시험장소(응시지역)	사 진 (가로 3.5cm × 세로 4.5cm)
성명	생년월일		
시험일시			

년 월 일

한국소방안전원장 인

## 응시자 주의사항

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·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(흑색 필기구, 컴퓨터용 수성싸인펜, 지우개 및 계산기 등)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야 합니다.